제2320호(별호)

고양시보

2026년 10월 29일 (목)

차 례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2380호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수정)	1

발행 : 고양시 / 편집 : 언론홍보담당관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고양시 공고 제2026 - 2380호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2026. 10. 29.

고 양 시 장 고양시장인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7년 ~ 2034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고양대곡 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토당동 일원	415,962㎡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18일(21일간)	-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지하 1층)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29. ~ 2026. 11.18.(21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 주소(FAX)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4931)

※ 열람관련문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031-8075-3073)

※ 사업 및 보상 관련문의

- 사업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 02-6908-9003, 9007)
- 보상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 02-6040-1304, 1396)

4. 행위 제한

○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토당동 일원	
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예정)	
공람기간	2026. 10. 29. ~ 2026. 11. 18.	
관련지번 (소유지번)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 ※ 누구나 작성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양대곡지식융합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